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30

발의연월일: 2022. 6. 17.

발 의 자:조명희·박대수·배준영

유경준 • 조경태 • 서일준

박성민 · 김용판 · 한무경

김승수 · 최춘식 · 홍문표

윤창현 • 박대출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이 조손가정을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조손가정을 보육의 우 선 제공에서 제외하고 있음. 조손가정의 영유아역시 저소득층이나 장 애부모 가정 등과 같이 보육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들도 보육의 우선제 공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,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8조제1항 제2호). 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2호 중 "제5조에"를 "제5조 또는 제5조의2제2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 국	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
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	
인,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	
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	
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	
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	
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	
촉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	
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	
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	
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	
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	
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<u>제5조</u>	2 <u>제5조</u>
<u>에</u>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	또는 제5조의2제2항에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